

부천동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
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47 외 1필지 소재 '부천동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7월 29일

부 천 시 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종 류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소규모재건축사업)
- 나. 명 칭 : 부천동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
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가. 위 치 :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47 외 1필지
- 나. 면 적 : 4,128㎡

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

- 가. 착 수 예 정 일 : 미정
- 나. 준 공 예 정 일 : 미정
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- 가. 조 합 명 칭 : 부천동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(조합장 이경화)
- 나. 사 무 실 소 재 지 :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부일로812, 112호

5. 조합설립변경인가 변경 내용

○ 정관변경

- 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·공고 방법(제7조)
- 임원의 수(제15조)
- 임원의 직무 등(제16조)
- 총회의 설치(제20조)

○ 조합원 변경(86명 → 64명)

- 조합원 제외(22명)

6. 지형도면에 관한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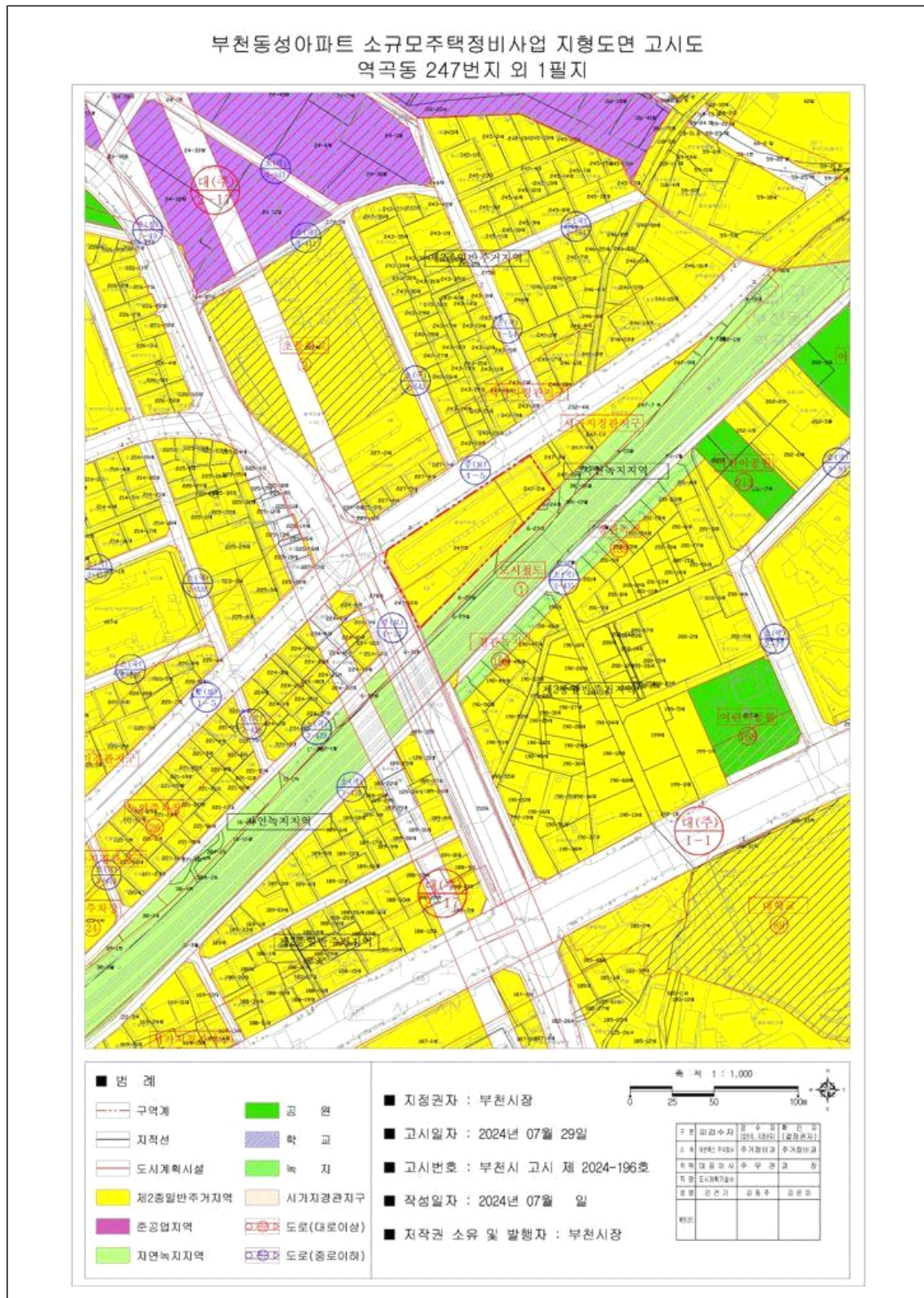
가. 사업시행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표시 번호	사업명	위치	면적(m ²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-	부천동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	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47 외 1필지	4,128	-	-	-

나. 사업시행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위치	면적(m ²)	결정(변경)사유
신설	-	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47 외 1필지	4,128	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 개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 관 한 지형도면 고시 등재

□ 붙임 : 지형도면 고시



소관부서	주거정비과	담당자 직 · 성명	주무관 김동주	전화번호	032-625-3746
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